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34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이수진・김성환・장철민

김현정 • 민병덕 • 최기상

서미화 · 김태년 · 허 영

송옥주 · 신장식 · 김남근

이용우 • 전진숙 • 김 윤

한창민 • 백승아 • 김문수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, 노동조합, 기업,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(NGO)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.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,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
그러나,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'노동계', '근로자 대표', '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'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

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특히,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 나 배제할 경우,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 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.

이에,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'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'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,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,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제4호 중 "학계 및 노동계"를 "학계"로, "11인"을 "10인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·제3항·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본문 중 "제4호"를 각각 "제4호 및 제5호"로 한다.

5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1인

제10조제1항 중 "제4호"를 "제4호 및 제5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운	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
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	
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	
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	
다.	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	4
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	
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	
법조계·경제계·언론계· <u>학</u>	<u>क</u> ्रे
<u>계 및 노동계</u> 등 다양한 분야	<u>계</u>
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	
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<u>11인</u>	<u>10인</u>
이내의 사람	
<u><신 설></u>	5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
	노동단체의 추천으로 대통령
	이 위촉하는 사람 1인
② 제1항 <u>제4호</u> 의 규정에 따른	② <u>제4호 및 제5호</u>
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	
연임할 수 있다.	
③ 제1항 <u>제4호</u> 의 규정에 따른	③ <u>제4호 및 제5호</u>
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	
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	

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.

④ 제1항<u>제4호</u>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⑤ 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. 다만,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제10조(운영위원회의 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제9조제1항제2호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,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

	④ <u>제4호 및 제5호</u>
	 1. ~ 3. (현행과 같음)
	⑤제4호 및 제5호
	<u>.</u>
	⑥ (현행과 같음)
제	10조(운영위원회의 회의) ①
	<u>제4호 및 제5호</u>

다. ------. ② ~ ⑥ (생 략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